

가축인공수정소 [] 개설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수정소	④ 명칭
	⑤ 소재지

⑥ 수정인원

⑦ 정액 확보방법

⑧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신고사항 변경 일자와 그 사유

⑨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분실사유(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만 작성합니다)

「축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만 한정합니다). 다만, 영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정소 개설자가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⑨란에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⑥란의 수정인원은 수정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⑦란의 정액 확보방법은 자가 생산, 국산정액 구입 또는 수입한 정액 구입 등을 적습니다.
- 신고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명칭
 - 사업장의 소재지
 - 수정사 또는 수의사
- 과태료의 징수
 - 수정소의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